

펀드 변경 대비표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1. 대상펀드: 한국밸류 10년투자 소득공제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 변경시행일: 2019.04.01

3. 주요 변경 내용

- (1) 펀드명 변경: 한국밸류 10년투자 소득공제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한국밸류 10년투자 100세행복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2) 클래스 변경(기존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용): C⇒C-Y, C-E⇒Ce-Y, S-T⇒St-Y
- (3) 클래스 신설: A, A-E, A-G, C, C-E, C-G, C-P, C-Pe, C-R, C-Re, C-I, C-F, C-W, S
- (4)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표준편차 5.65% → 표준편차 6.50%

4. 변경대비표

1) 일괄신고서

항 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내용변경	1~6. (생략) 7.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일부 환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가입 후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시 추징세액 증가)하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생략)	1~6. (현행과 같음)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현행과 같음)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내용변경	<효력발생일> 2018년 10월 31일 <가입자격>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매년 6.30이전에 가입 시에는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가입 가능함 (주 1) ----- [직전 회계연도: 2017.03.17~2018.03.16] (주 2) (생략)	<효력발생일> 2019년 04월 01일 <가입자격> A, C class: 제한 없음 A-E, C-E class: 온라인 가입자 (주 1) 종류 C-Y, Ce-Y, St-Y, A-G, C-G, C-P, C-Pe, C-R, C-Re, C-I, C-F, C-W, S 수익증권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 [직전 회계연도: 2018.03.17~2019.03.16]
		(주 3)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부과되며, 보수는 최초보수계산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으로	(주3)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 후

		지급됩니다.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4) (현행과 같음) (주5)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 부과되며, 보수는 최초보수계산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으로 지급됩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운용전문인력 ~3. 수익구조	내용변경	1. 투자 목적: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서민과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국공채, 우량회사채 등의 채권에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40% 이상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저평가 되어 있는 가치주에 집중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 3. (생략)		1. 투자 목적: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국공채, 우량회사채 등의 채권에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40% 이상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저평가 되어 있는 가치주에 집중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 3. (현행과 같음)																																															
[간이투자설명서]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4. 운용전문인력	내용변경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성명</th> <th rowspan="2">생년</th> <th colspan="2">운용현황(2018.03.20)</th> <th rowspan="2">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th> </tr> <tr> <th>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th> <th>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이채원</td> <td>1964</td> <td>19</td> <td>31,755억</td> <td>- 중앙대 국제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동원투신운용(1996~2000) - 한국투자증권(2000~2006)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06~현재)</td> </tr> <tr> <td>정광우</td> <td>1984</td> <td>8</td> <td>13,436억</td> <td>- 서울대 경영학과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11~현재)</td> </tr> </tbody> </table>	성명	생년	운용현황(2018.03.20)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이채원	1964	19	31,755억	- 중앙대 국제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동원투신운용(1996~2000) - 한국투자증권(2000~2006)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06~현재)	정광우	1984	8	13,436억	- 서울대 경영학과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11~현재)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성명</th> <th rowspan="2">생년</th> <th colspan="2">운용현황(2019.03.18)</th> <th rowspan="2">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th> </tr> <tr> <th>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th> <th>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이채원</td> <td>1964</td> <td>23</td> <td>30,328억</td> <td>- 중앙대 국제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동원투신운용(1996~2000) - 한국투자증권(2000~2006)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06~현재)</td> </tr> <tr> <td>정광우</td> <td>1984</td> <td>3</td> <td>3,516억</td> <td>- 서울대 경영학과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11~현재)</td> </tr> </tbody> </table>	성명	생년	운용현황(2019.03.18)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이채원	1964	23	30,328억	- 중앙대 국제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동원투신운용(1996~2000) - 한국투자증권(2000~2006)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06~현재)	정광우	1984	3	3,516억	- 서울대 경영학과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11~현재)														
성명	생년	운용현황(2018.03.20)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이채원	1964	19	31,755억	- 중앙대 국제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동원투신운용(1996~2000) - 한국투자증권(2000~2006)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06~현재)																																															
정광우	1984	8	13,436억	- 서울대 경영학과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11~현재)																																															
성명	생년	운용현황(2019.03.18)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이채원	1964	23	30,328억	- 중앙대 국제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동원투신운용(1996~2000) - 한국투자증권(2000~2006)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06~현재)																																															
정광우	1984	3	3,516억	- 서울대 경영학과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11~현재)																																															
[간이투자설명서]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5. 투자실적 추이	내용변경	<p>5. 투자실적 추이 ※연도별수익률(세전기준) (단위: %)</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기간</th> <th>최근 1년차</th> <th>최근 2년차</th> <th>최근 3년차</th> <th>최근 4년차</th> <th>최근5년차</th> </tr> </thead> <tbody> <tr> <td></td> <td>17.03.21 ~ 18.03.20</td> <td>16.03.21 ~ 17.03.20</td> <td>15.03.21 ~ 16.03.20</td> <td>14.03.21 ~ 15.03.20</td> <td>-</td> </tr> <tr> <td>종류 C</td> <td>9.97</td> <td>3.83</td> <td>0.07</td> <td>6.72</td> <td>-</td> </tr> <tr> <td>비교지수</td> <td>7.38</td> <td>7.42</td> <td>-1.34</td> <td>3.27</td> <td>-</td> </tr> </tbody> </table> <p>(주 1) (생략) (주 2) 종류 C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3) (생략)</p>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17.03.21 ~ 18.03.20	16.03.21 ~ 17.03.20	15.03.21 ~ 16.03.20	14.03.21 ~ 15.03.20	-	종류 C	9.97	3.83	0.07	6.72	-	비교지수	7.38	7.42	-1.34	3.27	-	<p>5. 투자실적 추이 ※연도별수익률(세전기준) (단위: %)</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기간</th> <th>최근 1년차</th> <th>최근 2년차</th> <th>최근 3년차</th> <th>최근 4년차</th> <th>최근5년차</th> </tr> </thead> <tbody> <tr> <td></td> <td>18.03.19 ~ 19.03.18</td> <td>17.03.19 ~ 18.03.18</td> <td>16.03.19 ~ 17.03.18</td> <td>15.03.19 ~ 16.03.18</td> <td>14.03.19 ~ 15.03.18</td> </tr> <tr> <td>종류 C-Y</td> <td>-1.61</td> <td>9.99</td> <td>3.99</td> <td>0.32</td> <td>7.12</td> </tr> <tr> <td>비교지수</td> <td>-5.08</td> <td>7.36</td> <td>7.61</td> <td>-1.26</td> <td>2.60</td> </tr> </tbody> </table> <p>(주 1) (현행과 같음) (주 2) 종류 C-Y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또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4) (현행과 같음)</p>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18.03.19 ~ 19.03.18	17.03.19 ~ 18.03.18	16.03.19 ~ 17.03.18	15.03.19 ~ 16.03.18	14.03.19 ~ 15.03.18	종류 C-Y	-1.61	9.99	3.99	0.32	7.12	비교지수	-5.08	7.36	7.61	-1.26	2.60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17.03.21 ~ 18.03.20	16.03.21 ~ 17.03.20	15.03.21 ~ 16.03.20	14.03.21 ~ 15.03.20	-																																													
종류 C	9.97	3.83	0.07	6.72	-																																														
비교지수	7.38	7.42	-1.34	3.27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18.03.19 ~ 19.03.18	17.03.19 ~ 18.03.18	16.03.19 ~ 17.03.18	15.03.19 ~ 16.03.18	14.03.19 ~ 15.03.18																																													
종류 C-Y	-1.61	9.99	3.99	0.32	7.12																																														
비교지수	-5.08	7.36	7.61	-1.26	2.60																																														
[간이투자설명서]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7. 투자위험	내용변경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2018년 03월 16일) 기준 직전 3년간의 주간 수익률 변동을 측정한 연환산 표준편차가 5.65%로 산출되어 6단계의 위험등급 중4등급(보통 위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2019년 03월 16일) 기준 직전 3년간의 주간 수익률 변동을 측정한 연환산 표준편차가 6.50%로 산출되어 6단계의 위험등급 중4등급(보통 위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등급 분류 [간이투자설명서]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내용변경	(1)~(2) (생략) (3) (생략) <table border="1" data-bbox="371 363 1232 432"> <tr> <th colspan="4">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th> </tr> <tr> <td colspan="4">(생략)</td> </tr> </table>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연금 수령 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 외 수령 시)에 대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현행과 같음)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생략)																																																																					
제1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내용변경	<table border="1" data-bbox="371 438 1232 534"> <tr> <th>명칭</th> <th colspan="3">한국별류 10년투자 소득공제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코드: AP625)</th> </tr> <tr> <th>종류(클래스)</th> <td>C</td> <td>C-E</td> <td>S-T</td> </tr> <tr> <th>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th> <td>AP626</td> <td>AP905</td> <td>AP627</td> </tr> </table>	명칭	한국별류 10년투자 소득공제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코드: AP625)			종류(클래스)	C	C-E	S-T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P626	AP905	AP627	<table border="1" data-bbox="1249 438 2125 534"> <tr> <th colspan="14">한국별류 10년투자 100세형복합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코드: AP625)</th> </tr> <tr> <th>종류 (클래스)</th> <th>C-Y</th> <th>Ce-Y</th> <th>St-Y</th> <th>A</th> <th>A-E</th> <th>A-G</th> <th>C</th> <th>C-E</th> <th>C-G</th> <th>C-P</th> <th>C-Pe</th> <th>C-R</th> <th>C-Re</th> <th>C-W</th> <th>S</th> </tr> <tr> <th>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th> <td>AP626</td> <td>AP905</td> <td>AP627</td> <td>CN522</td> <td>CN523</td> <td>CN524</td> <td>CN525</td> <td>CN526</td> <td>CN527</td> <td>CN528</td> <td>CN529</td> <td>CN530</td> <td>CN531</td> <td>CN532</td> <td>CN533</td> <td>CN534</td> <td>CN535</td> </tr> </table>	한국별류 10년투자 100세형복합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코드: AP625)														종류 (클래스)	C-Y	Ce-Y	St-Y	A	A-E	A-G	C	C-E	C-G	C-P	C-Pe	C-R	C-Re	C-W	S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P626	AP905	AP627	CN522	CN523	CN524	CN525	CN526	CN527	CN528	CN529	CN530	CN531	CN532	CN533	CN534	CN535						
명칭	한국별류 10년투자 소득공제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코드: AP625)																																																																				
종류(클래스)	C	C-E	S-T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P626	AP905	AP627																																																																		
한국별류 10년투자 100세형복합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코드: AP625)																																																																					
종류 (클래스)	C-Y	Ce-Y	St-Y	A	A-E	A-G	C	C-E	C-G	C-P	C-Pe	C-R	C-Re	C-W	S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P626	AP905	AP627	CN522	CN523	CN524	CN525	CN526	CN527	CN528	CN529	CN530	CN531	CN532	CN533	CN534	CN535																																																				
제2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내용변경	<table border="1" data-bbox="371 566 1232 715"> <tr> <th>종류</th> <th>펀드코드</th> <th>특징</th> </tr> <tr> <td>C</td> <td>AP626</td> <td>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td> </tr> <tr> <td>C-E</td> <td>AP905</td> <td>온라인 전용으로 판매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td> </tr> <tr> <td>S-T</td> <td>AP627</td> <td>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td> </tr> </table>	종류	펀드코드	특징	C	AP626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C-E	AP905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S-T	AP627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table border="1" data-bbox="1249 566 2125 1286"> <tr> <th>종류</th> <th>펀드코드</th> <th>가입자격</th> </tr> <tr> <td>C-Y</td> <td>AP626</td> <td>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td> </tr> <tr> <td>Ce-Y</td> <td>AP905</td> <td>온라인 전용으로 판매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td> </tr> <tr> <td>St-Y</td> <td>AP627</td> <td>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td> </tr> <tr> <td>A</td> <td>CN522</td> <td>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td> </tr> <tr> <td>A-E</td> <td>CN523</td> <td>온라인 전용으로 판매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td> </tr> <tr> <td>A-G</td> <td>CN524</td> <td>판매회사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td> </tr> <tr> <td>C</td> <td>CN525</td> <td>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td> </tr> <tr> <td>C-E</td> <td>CN526</td> <td>온라인 전용으로 판매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td> </tr> <tr> <td>C-G</td> <td>CN527</td> <td>판매회사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td> </tr> <tr> <td>C-P</td> <td>CN528</td> <td>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습니다.</td> </tr> <tr> <td>C-Pe</td> <td>CN529</td> <td>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판매회사의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습니다.</td> </tr> <tr> <td>C-R</td> <td>CN530</td> <td>퇴직연금계좌 가입자,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td> </tr> <tr> <td>C-Re</td> <td>CN531</td> <td>퇴직연금계좌 가입자 중 온라인 전용 투자자,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td> </tr> <tr> <td>C-I</td> <td>CN532</td> <td>최초 납입금액이 20 억원 이상인 투자자이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td> </tr> <tr> <td>C-F</td> <td>CN533</td> <td>100억원 이상 매입한 투자자 및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혹은 기관투자자이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td> </tr> <tr> <td>C-W</td> <td>CN534</td> <td>Wrap Account 용(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 91 조의 18 제 3 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td> </tr> <tr> <td>S</td> <td>CN535</td> <td>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td> </tr> </table>	종류	펀드코드	가입자격	C-Y	AP626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Ce-Y	AP905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St-Y	AP627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A	CN522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A-E	CN523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A-G	CN524	판매회사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C	CN525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C-E	CN526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C-G	CN527	판매회사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C-P	CN528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습니다.	C-Pe	CN529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판매회사의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습니다.	C-R	CN530	퇴직연금계좌 가입자,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C-Re	CN531	퇴직연금계좌 가입자 중 온라인 전용 투자자,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C-I	CN532	최초 납입금액이 20 억원 이상인 투자자이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C-F	CN533	100억원 이상 매입한 투자자 및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혹은 기관투자자이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C-W	CN534	Wrap Account 용(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 91 조의 18 제 3 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S	CN535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종류	펀드코드	특징																																																																			
C	AP626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C-E	AP905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S-T	AP627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종류	펀드코드	가입자격																																																																			
C-Y	AP626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Ce-Y	AP905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St-Y	AP627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A	CN522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A-E	CN523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A-G	CN524	판매회사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C	CN525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C-E	CN526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C-G	CN527	판매회사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C-P	CN528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습니다.																																																																			
C-Pe	CN529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판매회사의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습니다.																																																																			
C-R	CN530	퇴직연금계좌 가입자,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C-Re	CN531	퇴직연금계좌 가입자 중 온라인 전용 투자자,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C-I	CN532	최초 납입금액이 20 억원 이상인 투자자이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C-F	CN533	100억원 이상 매입한 투자자 및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혹은 기관투자자이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C-W	CN534	Wrap Account 용(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 91 조의 18 제 3 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S	CN535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내용변경	<table border="1" data-bbox="371 1292 1232 1445"> <tr> <th>변경시행일</th> <th>변경사항</th> </tr> <tr> <td>2014.02</td> <td>최초신고</td> </tr> <tr> <td>2015.01</td> <td>과세 관련 추가 안내사항 등 반영</td> </tr> <tr> <td>2016.07</td> <td>위험등급 분류체계 변경 반영</td> </tr> <tr> <td>2017.03</td> <td>위험등급 변경</td> </tr> <tr> <td>2017.11</td> <td>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td> </tr> <tr> <td>2018.03</td> <td>위험등급 변경</td> </tr> </table>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14.02	최초신고	2015.01	과세 관련 추가 안내사항 등 반영	2016.07	위험등급 분류체계 변경 반영	2017.03	위험등급 변경	2017.1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8.03	위험등급 변경	<table border="1" data-bbox="1249 1292 2125 1445"> <tr> <th>변경시행일</th> <th>변경사항</th> </tr> <tr> <td>2014.02</td> <td>최초신고</td> </tr> <tr> <td>2015.01</td> <td>과세 관련 추가 안내사항 등 반영</td> </tr> <tr> <td>2016.07</td> <td>위험등급 분류체계 변경 반영</td> </tr> <tr> <td>2017.03</td> <td>위험등급 변경</td> </tr> <tr> <td>2017.11</td> <td>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td> </tr> <tr> <td>2018.03</td> <td>위험등급 변경</td> </tr> </table>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14.02	최초신고	2015.01	과세 관련 추가 안내사항 등 반영	2016.07	위험등급 분류체계 변경 반영	2017.03	위험등급 변경	2017.1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8.03	위험등급 변경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14.02	최초신고																																																																				
2015.01	과세 관련 추가 안내사항 등 반영																																																																				
2016.07	위험등급 분류체계 변경 반영																																																																				
2017.03	위험등급 변경																																																																				
2017.1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8.03	위험등급 변경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14.02	최초신고																																																																				
2015.01	과세 관련 추가 안내사항 등 반영																																																																				
2016.07	위험등급 분류체계 변경 반영																																																																				
2017.03	위험등급 변경																																																																				
2017.1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8.03	위험등급 변경																																																																				

		2018.10	부책임용인력 변경		2018.10	부책임용인력 변경		2019.04	펀드 리뉴얼(펀드명 변경, 클래스 변경 및 추가)		
제2부. 4. 집합투자업자	내용변경	회사명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식회사			회사명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8(대표전화 : 02-3276-6000)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대표전화 : 02-6978-6300)				
제2부. 5. 운용전문인력	내용변경	(1) 책임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운용현황(2018.03.20)		성명	생년	운용현황(2019.03.18)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이재원	1964	19	31,755억	이재원	1964	23	30,328억	- 중앙대 국제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동원투신운용(1996~2000) - 한국투자증권(2000~2006)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06~현재)	
		정광우	1984	8	13,436억	정광우	1984	3	3,516억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11~현재)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내용변경	나. 종류형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종류	특징			종류	특징				
		C	판매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C-Y	판매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C-E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하며, 판매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Ce-Y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하며, 판매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S-T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판매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St-Y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판매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A	선취판매수수료를 청구합니다.				
						A-E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청구합니다.				
						A-G	판매회사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청구합니다.				
						C	판매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C-E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하며, 판매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C-G	판매회사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며, 판매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C-Pe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판매회사의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C-R	퇴직연금계좌 가입자, 판매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C-Re	퇴직연금계좌 가입자 중 온라인 전용 투자자, 판매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C-I	최초 납입금액이 20 억원 이상인 투자자용이며, 판매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C-F	100억원 이상 매입한 투자자 및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혹은 기관투자자용이며, 판매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C-W	Wrap Account 용(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 91 조의 18 제 3 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용이며, 판매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내용변경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서민과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국공채, 우량회사채 등의 채권에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40% 이상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저평가 되어 있는 가치주에 집중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투자신탁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중 "수익자에 대한 과세" 부분을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국공채, 우량회사채 등의 채권에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40% 이상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저평가 되어 있는 가치주에 집중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투자신탁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중 "수익자에 대한 과세" 부분을					

C	0.2500	0.5000	0.0300	0.0180	0.7980	0.0072	0.8052	0.1165
C-E	0.2500	0.2500	0.0300	0.0180	0.5480	0.0073	0.5552	0.1172
S-T	0.2500	0.2500	0.0300	0.0180	0.5480	0.0071	0.5551	0.1172
지급시기	최초보수계산일로부터 매3개월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주1) -----[직전 회계년도 : 2017.03.17~2018.03.16]
 주2) -----[직전 회계년도 : 2017.03.17~2018.03.16]
 주3) (생략)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종류	1년	3년	5년	10년
C	81	252	438	976
C-E	56	174	303	680
S-T	56	174	303	680

C-Y	0.2500	0.5000	0.0300	0.0180	0.7980	0.0068	0.8048	0.1086
Ce-Y	0.2500	0.2500	0.0300	0.0180	0.5480	0.0068	0.5548	0.1084
St-Y	0.2500	0.2500	0.0300	0.0180	0.5480	0.0068	0.5548	0.1086
A	0.2500	0.5000	0.0300	0.0180	0.7980	-	0.7980	-
A-E	0.2500	0.2500	0.0300	0.0180	0.5480	-	0.5480	-
A-G	0.2500	0.3500	0.0300	0.0180	0.6480	-	0.6480	-
C	0.2500	0.9000	0.0300	0.0180	1.1980	-	1.1980	-
C-E	0.2500	0.4500	0.0300	0.0180	0.7480	-	0.7480	-
C-G	0.2500	0.6000	0.0300	0.0180	0.8980	-	0.8980	-
C-P	0.2500	0.8000	0.0300	0.0180	1.0980	-	1.0980	-
C-Pe	0.2500	0.4000	0.0300	0.0180	0.6980	-	0.6980	-
C-R	0.2500	0.7000	0.0300	0.0180	0.9980	-	0.9980	-
C-Re	0.2500	0.3500	0.0300	0.0180	0.6480	-	0.6480	-
C-I	0.2500	0.0500	0.0300	0.0180	0.3480	-	0.3480	-
C-F	0.2500	0.0300	0.0300	0.0180	0.3280	-	0.3280	-
C-W	0.2500	-	0.0300	0.0180	0.2980	-	0.2980	-
S	0.2500	0.2500	0.0300	0.0180	0.5480	-	0.5480	-
지급시기	최초보수계산일로부터 매3개월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주1) -----[직전 회계년도 : 2018.03.17~2019.03.16]
 주2) -----[직전 회계년도 : 2018.03.17~2019.03.16]
 주3) (현행과 같음)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종류	1년	3년	5년	10년
C-Y	80	252	438	975
Ce-Y	55	174	303	680
St-Y	55	174	303	680
A	130	229	482	1,013
A-E	80	197	324	695
A-G	100	238	387	823
C	120	373	646	1,425
C-E	75	234	407	909
C-G	90	281	487	1,083
C-P	110	342	594	1,312
C-Pe	70	219	380	850
C-R	100	312	541	1,198
C-Re	65	203	353	791
C-I	35	109	191	431

				<table border="1"> <tr> <td>C-F</td> <td>33</td> <td>103</td> <td>180</td> <td>406</td> </tr> <tr> <td>C-W</td> <td>30</td> <td>94</td> <td>164</td> <td>370</td> </tr> <tr> <td>S</td> <td>55</td> <td>172</td> <td>300</td> <td>672</td> </tr> </table> <p>주 1) (현행과 같음) 주 2) 종류 A 와 종류 C 의 총 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1년 2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C-F	33	103	180	406	C-W	30	94	164	370	S	55	172	300	672								
C-F	33	103	180	406																							
C-W	30	94	164	370																							
S	55	172	300	672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내용변경	<p>나. 과세 (1)~(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p> <p>(생략)</p>	<p>나. 과세 (1)~(3) (현행과 같음)</p> <p>(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p> <p>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연금수령 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 외 수령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납입요건</td> <td>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td> </tr> <tr> <td>수령요건</td> <td>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td> </tr> <tr> <td>공제제도</td> <td>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td> </tr> <tr> <td>연금수령 시 과세</td> <td>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td> </tr> <tr> <td>분리과세한도</td> <td>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td> </tr> <tr> <td>연금 외 수령 시 과세 (통상적인 경우)</td> <td>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td> </tr> <tr> <td>해지가산세</td> <td>없음</td> </tr> <tr> <td>연금 외 수령 시 부득이한 경우</td> <td>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td> </tr> <tr> <td>연금 외 수령 시 과세 (부득이한 경우)</td> <td>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td> </tr> <tr> <td>연금계좌 승계</td> <td>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td> </tr> </tbody> </table> <p>주) 기타소득세와 연금소득세 과세대상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입니다.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종류 C-Y, Ce-Y, St-Y에만 해당)</p> <p>(현행과 같음)</p>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공제제도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 외 수령 시 과세 (통상적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 외 수령 시 부득이한 경우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연금 외 수령 시 과세 (부득이한 경우)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공제제도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 외 수령 시 과세 (통상적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 외 수령 시 부득이한 경우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연금 외 수령 시 과세 (부득이한 경우)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내용변경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간</th> <th>회계감사법인</th> <th>감사의견</th> </tr> </thead> <tbody> <tr> <td>제 4기 (2017.03.17 - 2018.03.16)</td> <td>삼일회계법인</td> <td>적정</td> </tr> <tr> <td>제 3기 (2016.03.17 - 2017.03.16)</td> <td>삼일회계법인</td> <td>적정</td> </tr> <tr> <td>제 2기 (2015.03.17 - 2016.03.16)</td> <td>삼일회계법인</td> <td>적정</td> </tr> </tbody> </table> <p>제 4기(2017.03.17~2018.03.16) 기준 작성</p>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4기 (2017.03.17 - 2018.03.16)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3기 (2016.03.17 - 2017.03.16)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2기 (2015.03.17 - 2016.03.16)	삼일회계법인	적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간</th> <th>회계감사법인</th> <th>감사의견</th> </tr> </thead> <tbody> <tr> <td>제 5기 (2018.03.17 - 2019.03.16)</td> <td>삼화회계법인</td> <td>적정</td> </tr> <tr> <td>제 4기 (2017.03.17 - 2018.03.16)</td> <td>삼일회계법인</td> <td>적정</td> </tr> <tr> <td>제 3기 (2016.03.17 - 2017.03.16)</td> <td>삼일회계법인</td> <td>적정</td> </tr> </tbody> </table> <p>제 5기 (2018.03.17 - 2019.03.16) 기준 작성</p>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5기 (2018.03.17 - 2019.03.16)	삼화회계법인	적정	제 4기 (2017.03.17 - 2018.03.16)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3기 (2016.03.17 - 2017.03.16)	삼일회계법인	적정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4기 (2017.03.17 - 2018.03.16)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3기 (2016.03.17 - 2017.03.16)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2기 (2015.03.17 - 2016.03.16)	삼일회계법인	적정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5기 (2018.03.17 - 2019.03.16)	삼화회계법인	적정																									
제 4기 (2017.03.17 - 2018.03.16)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3기 (2016.03.17 - 2017.03.16)	삼일회계법인	적정																									
3부. 3.	내용변경	<p>2018.03.20 기준 작성(운용실적) 2018.03.16 기준 작성(자산구성현황)</p>	<p>2019.03.18 기준 작성(운용실적) 2019.03.16 기준 작성(자산구성현황)</p>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내용변경	<table border="1"> <tr> <td style="background-color: yellow;">회사명</td> <td>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yellow;">주소 및 연락처</td> <td>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대표전화: 02-3276-6000, www.koreavalueasset.com)</td> </tr> <tr> <td colspan="2">(생략)</td> </tr> </table>	회사명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대표전화: 02-3276-6000, www.koreavalueasset.com)	(생략)		<table border="1"> <tr> <td style="background-color: yellow;">회사명</td> <td>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yellow;">주소 및 연락처</td> <td>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대표전화: 02-6978-6300, www.koreavalueasset.com)</td> </tr> <tr> <td colspan="2">(현행과 같음)</td> </tr> </table>	회사명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대표전화: 02-6978-6300, www.koreavalueasset.com)	(현행과 같음)																																																																																																																																																																																																							
회사명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대표전화: 02-3276-6000, www.koreavalueasset.com)																																																																																																																																																																																																																				
(생략)																																																																																																																																																																																																																					
회사명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대표전화: 02-6978-6300, www.koreavalueasset.com)																																																																																																																																																																																																																				
(현행과 같음)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내용변경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요약대차대조표</th> <th colspan="3">요약손익계산서</th> </tr> <tr> <th>계정과목</th> <th>2017.12.31</th> <th>2016.12.31</th> <th>계정과목</th> <th>'17.01.01 ~'17.12.31</th> <th>'16.01.01 ~'16.12.31</th> </tr> </thead> <tbody> <tr> <td>현금및예치금</td> <td>29,198</td> <td>31,097</td> <td>영업수익</td> <td>22,517</td> <td>27,777</td> </tr> <tr> <td>매도가능 금융자산</td> <td>1,519</td> <td>1,519</td> <td>영업비용</td> <td>9,366</td> <td>10,129</td> </tr> <tr> <td>대출채권 및 수취채권</td> <td>0</td> <td>0</td> <td>영업이익</td> <td>13,152</td> <td>17,648</td> </tr> <tr> <td>유형자산</td> <td>217</td> <td>261</td> <td>영업외수익</td> <td>1</td> <td>4</td> </tr> <tr> <td>무형자산</td> <td>728</td> <td>761</td> <td>영업외비용</td> <td>62</td> <td>2</td> </tr> <tr> <td>이연법인세자산</td> <td>198</td> <td>291</td> <td>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td> <td>13,091</td> <td>17,650</td> </tr> <tr> <td>기타자산</td> <td>3,861</td> <td>6,538</td> <td>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td> <td>3,129</td> <td>4,182</td> </tr> <tr> <td>자산총계</td> <td>35,722</td> <td>40,466</td> <td>계속사업이익</td> <td>9,962</td> <td>13,468</td> </tr> <tr> <td>퇴직급여부채</td> <td>0</td> <td>0</td> <td>당기순이익</td> <td>9,962</td> <td>13,468</td> </tr> <tr> <td>기타부채</td> <td>1,543</td> <td>3,249</td> <td></td> <td></td> <td></td> </tr> <tr> <td>부채총계</td> <td>1,543</td> <td>3,249</td> <td></td> <td></td> <td></td> </tr> <tr> <td>자본금</td> <td>10,000</td> <td>10,000</td> <td></td> <td></td> <td></td> </tr> <tr> <td>자본잉여금</td> <td>0</td> <td>0</td> <td></td> <td></td> <td></td> </tr> <tr> <td>이익잉여금</td> <td>24,179</td> <td>27,217</td> <td></td> <td></td> <td></td> </tr> <tr> <td>자본총계</td> <td>34,179</td> <td>37,217</td> <td></td> <td></td> <td></td> </tr> <tr> <td>부채와자본총계</td> <td>35,722</td> <td>40,466</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17.12.31	2016.12.31	계정과목	'17.01.01 ~'17.12.31	'16.01.01 ~'16.12.31	현금및예치금	29,198	31,097	영업수익	22,517	27,777	매도가능 금융자산	1,519	1,519	영업비용	9,366	10,129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0	0	영업이익	13,152	17,648	유형자산	217	261	영업외수익	1	4	무형자산	728	761	영업외비용	62	2	이연법인세자산	198	291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13,091	17,650	기타자산	3,861	6,538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3,129	4,182	자산총계	35,722	40,466	계속사업이익	9,962	13,468	퇴직급여부채	0	0	당기순이익	9,962	13,468	기타부채	1,543	3,249				부채총계	1,543	3,249				자본금	10,000	10,000				자본잉여금	0	0				이익잉여금	24,179	27,217				자본총계	34,179	37,217				부채와자본총계	35,722	40,466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요약대차대조표</th> <th colspan="3">요약손익계산서</th> </tr> <tr> <th>계정과목</th> <th>2018.12.31</th> <th>2017.12.31</th> <th>계정과목</th> <th>'18.01.01 ~'18.12.31</th> <th>'17.01.01 ~'17.12.31</th> </tr> </thead> <tbody> <tr> <td>현금및예치금</td> <td>30,507</td> <td>29,198</td> <td>영업수익</td> <td>19,769</td> <td>24,198</td> </tr> <tr> <td>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td> <td>188</td> <td>0</td> <td>영업비용</td> <td>10,685</td> <td>9,704</td> </tr> <tr> <td>기타포괄손익 인식금융자산</td> <td>1,419</td> <td>1,519</td> <td>영업이익</td> <td>9,084</td> <td>14,494</td> </tr> <tr> <td>유형자산</td> <td>460</td> <td>208</td> <td>영업외수익</td> <td>26</td> <td>1</td> </tr> <tr> <td>무형자산</td> <td>325</td> <td>613</td> <td>영업외비용</td> <td>92</td> <td>170</td> </tr> <tr> <td>이연법인세자산</td> <td>634</td> <td>256</td> <td>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td> <td>9,017</td> <td>14,325</td> </tr> <tr> <td>기타자산</td> <td>1,285</td> <td>5,515</td> <td>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td> <td>2,244</td> <td>3,385</td> </tr> <tr> <td>자산총계</td> <td>34,818</td> <td>37,310</td> <td>계속사업이익</td> <td>6,773</td> <td>10,940</td> </tr> <tr> <td>기타부채</td> <td>2,811</td> <td>2,153</td> <td>당기순이익</td> <td>6,773</td> <td>10,940</td> </tr> <tr> <td>부채총계</td> <td>2,811</td> <td>2,153</td> <td></td> <td></td> <td></td> </tr> <tr> <td>자본금</td> <td>10,000</td> <td>10,000</td> <td></td> <td></td> <td></td> </tr> <tr> <td>기타포괄손익누계액</td> <td>-73</td> <td>0</td> <td></td> <td></td> <td></td> </tr> <tr> <td>이익잉여금</td> <td>22,079</td> <td>25,157</td> <td></td> <td></td> <td></td> </tr> <tr> <td>자본총계</td> <td>32,007</td> <td>35,157</td> <td></td> <td></td> <td></td> </tr> <tr> <td>부채와자본총계</td> <td>34,818</td> <td>37,310</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18.12.31	2017.12.31	계정과목	'18.01.01 ~'18.12.31	'17.01.01 ~'17.12.31	현금및예치금	30,507	29,198	영업수익	19,769	24,198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188	0	영업비용	10,685	9,704	기타포괄손익 인식금융자산	1,419	1,519	영업이익	9,084	14,494	유형자산	460	208	영업외수익	26	1	무형자산	325	613	영업외비용	92	170	이연법인세자산	634	25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017	14,325	기타자산	1,285	5,515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2,244	3,385	자산총계	34,818	37,310	계속사업이익	6,773	10,940	기타부채	2,811	2,153	당기순이익	6,773	10,940	부채총계	2,811	2,153				자본금	10,000	10,0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3	0				이익잉여금	22,079	25,157				자본총계	32,007	35,157				부채와자본총계	34,818	37,310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17.12.31	2016.12.31	계정과목	'17.01.01 ~'17.12.31	'16.01.01 ~'16.12.31																																																																																																																																																																																																																
현금및예치금	29,198	31,097	영업수익	22,517	27,777																																																																																																																																																																																																																
매도가능 금융자산	1,519	1,519	영업비용	9,366	10,129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0	0	영업이익	13,152	17,648																																																																																																																																																																																																																
유형자산	217	261	영업외수익	1	4																																																																																																																																																																																																																
무형자산	728	761	영업외비용	62	2																																																																																																																																																																																																																
이연법인세자산	198	291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13,091	17,650																																																																																																																																																																																																																
기타자산	3,861	6,538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3,129	4,182																																																																																																																																																																																																																
자산총계	35,722	40,466	계속사업이익	9,962	13,468																																																																																																																																																																																																																
퇴직급여부채	0	0	당기순이익	9,962	13,468																																																																																																																																																																																																																
기타부채	1,543	3,249																																																																																																																																																																																																																			
부채총계	1,543	3,249																																																																																																																																																																																																																			
자본금	10,000	10,000																																																																																																																																																																																																																			
자본잉여금	0	0																																																																																																																																																																																																																			
이익잉여금	24,179	27,217																																																																																																																																																																																																																			
자본총계	34,179	37,217																																																																																																																																																																																																																			
부채와자본총계	35,722	40,466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18.12.31	2017.12.31	계정과목	'18.01.01 ~'18.12.31	'17.01.01 ~'17.12.31																																																																																																																																																																																																																
현금및예치금	30,507	29,198	영업수익	19,769	24,198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188	0	영업비용	10,685	9,704																																																																																																																																																																																																																
기타포괄손익 인식금융자산	1,419	1,519	영업이익	9,084	14,494																																																																																																																																																																																																																
유형자산	460	208	영업외수익	26	1																																																																																																																																																																																																																
무형자산	325	613	영업외비용	92	170																																																																																																																																																																																																																
이연법인세자산	634	25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017	14,325																																																																																																																																																																																																																
기타자산	1,285	5,515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2,244	3,385																																																																																																																																																																																																																
자산총계	34,818	37,310	계속사업이익	6,773	10,940																																																																																																																																																																																																																
기타부채	2,811	2,153	당기순이익	6,773	10,940																																																																																																																																																																																																																
부채총계	2,811	2,153																																																																																																																																																																																																																			
자본금	10,000	10,0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3	0																																																																																																																																																																																																																			
이익잉여금	22,079	25,157																																																																																																																																																																																																																			
자본총계	32,007	35,157																																																																																																																																																																																																																			
부채와자본총계	34,818	37,310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내용변경	<p>라. 운용자산 규모 (2018.03.20 현재/ 단위: 억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증 권</th> <th rowspan="2">부동산</th> <th rowspan="2">특별자산</th> <th rowspan="2">혼합자산</th> <th rowspan="2">MMF</th> <th rowspan="2">총 계</th> </tr> <tr> <th>주식형</th> <th>혼합형</th> <th>채권형</th> </tr> </thead> <tbody> <tr> <td>수탁고</td> <td>20,690</td> <td>613</td> <td>14,215</td> <td>0</td> <td>0</td> <td>0</td> <td>0</td> <td>35,517</td> </tr> </tbody> </table>	구분	증 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수탁고	20,690	613	14,215	0	0	0	0	35,517	<p>(2019.03.18 현재/ 단위: 억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증 권</th> <th rowspan="2">부동산</th> <th rowspan="2">특별자산</th> <th rowspan="2">혼합자산</th> <th rowspan="2">MMF</th> <th rowspan="2">총 계</th> </tr> <tr> <th>주식형</th> <th>채권형</th> <th>혼합형</th> </tr> </thead> <tbody> <tr> <td>수탁고</td> <td>20,549</td> <td>612</td> <td>12,269</td> <td>0</td> <td>0</td> <td>385</td> <td>0</td> <td>33,816</td> </tr> </tbody> </table>	구분	증 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수탁고	20,549	612	12,269	0	0	385	0	33,816																																																																																																																																																																								
구분	증 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수탁고	20,690	613	14,215	0	0	0	0	35,517																																																																																																																																																																																																													
구분	증 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수탁고	20,549	612	12,269	0	0	385	0	33,816																																																																																																																																																																																																													
제 5 부. 4.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내용변경	<p>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기준일: 2018.03.16 현재, 단위: 백만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이해관계인</th> <th rowspan="2">거래의 종류</th> <th rowspan="2">자산의 종류</th> <th rowspan="2">거래 금액</th> </tr> <tr> <th>성명(상호)</th> <th>관 계</th> </tr> </thead> <tbody> <tr> <td>한국투자증권</td> <td>최대주주</td> <td>위탁거래</td> <td>주식</td> <td>54,374</td> </tr> <tr> <td>한국투자증권</td> <td>최대주주</td> <td>위탁거래</td> <td>채권</td> <td>3,690</td> </tr> </tbody> </table> <p>주) 거래 금액은 작성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간 금액입니다</p>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성명(상호)	관 계	한국투자증권	최대주주	위탁거래	주식	54,374	한국투자증권	최대주주	위탁거래	채권	3,690	<p>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기준일: 2019.03.16 현재, 단위: 백만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이해관계인</th> <th rowspan="2">거래의 종류</th> <th rowspan="2">자산의 종류</th> <th rowspan="2">거래 금액</th> </tr> <tr> <th>성명(상호)</th> <th>관 계</th> </tr> </thead> <tbody> <tr> <td>한국투자증권</td> <td>최대주주</td> <td>위탁거래</td> <td>주식</td> <td>49,417</td> </tr> </tbody> </table> <p>주) 거래 금액은 작성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간 금액입니다.</p>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성명(상호)	관 계	한국투자증권	최대주주	위탁거래	주식	49,417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성명(상호)	관 계																																																																																																																																																																																																																				
한국투자증권	최대주주	위탁거래	주식	54,374																																																																																																																																																																																																																	
한국투자증권	최대주주	위탁거래	채권	3,690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성명(상호)	관 계																																																																																																																																																																																																																				
한국투자증권	최대주주	위탁거래	주식	49,417																																																																																																																																																																																																																	

2) 신탁계약서

항 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목	내용변경	<p>한국밸류 10년투자 소득공제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p> <p>[협회펀드코드 : 종류모(AP625), 종류C(AP626), 종류C-E(AP905), 종류S-T(AP627)]</p>	<p>한국밸류 10년투자 100세행복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p> <p>[협회펀드코드 : 종류모(AP625), 종류C-Y(AP626), 종류Ce-Y(AP905), 종류St-Y(AP627), 종류A(CN522), 종류A-E(CN523), 종류A-G(CN524), 종류C(CN525), 종류C-E(CN526), 종류C-G(CN527), 종류C-P(CN528), 종류C-Pe(CN529), 종류C-R(CN530), 종류C-Re(CN531), 종류C-I(CN532), 종류C-F(CN533), 종류C-W(CN534), 종류S(CN535)]</p>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내용변경	<p>① ~ ③ (생략)</p> <p>1. 종류C 수익증권 :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p> <p>2. 종류C-E 수익증권 :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p> <p>3. 종류S-T수익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1. 종류C-Y 수익증권 :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p> <p>2. 종류Ce-Y 수익증권 :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p> <p>3. 종류St-Y수익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p> <p>4. <u>종류A 수익증권: 판매수수료 징구 방법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u></p> <p>5. <u>종류A-E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하며 판매수수료 징구 방법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u></p> <p>6. <u>종류A-G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u></p> <p>7. <u>종류C 수익증권: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u></p> <p>8. <u>종류 C-E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u></p> <p>9. <u>종류C-G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u></p> <p>10. <u>종류C-P 수익증권: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u></p> <p>11. <u>종류C-Pe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u></p> <p>12. <u>종류C-R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에 한하여 발행되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u></p> <p>13. <u>종류C-Re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에 한하여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자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u></p> <p>14. <u>종류C-I 수익증권: 최초 납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투자자</u></p> <p>15. <u>종류C-F 수익증권</u></p> <p>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p> <p>나.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p> <p>다.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p> <p>16. <u>종류C-W 수익증권: Wrap Account(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3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보유자</u></p> <p>17. <u>종류S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 금융투자업자는</u></p>

		④(생략)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④(현행과 같음)
제3조의2(투자신탁의 가입제한)	내용변경	①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	① 이 투자신탁 중 종류 C-Y, Ce-Y, St-Y의 경우 가입자격은----- ② 이 투자신탁 중 종류 C-Y, Ce-Y, St-Y의 경우 수익자는 -----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내용변경	①(생략) 1. 종류C 수익증권 2. 종류C-E 수익증권 3. 종류S-T 수익증권 ②~⑤ (생략)	①(현행과 같음) 1. 종류C-Y 수익증권 2. 종류Ce-Y 수익증권 3. 종류St-Y 수익증권 4. 종류A 수익증권 5. 종류A-E 수익증권 6. 종류A-G 수익증권 7. 종류C 수익증권 8. 종류 C-E 수익증권 9. 종류C-G 수익증권 10. 종류C-P 수익증권 11. 종류C-Pe 수익증권 12. 종류C-R 수익증권 13. 종류C-Re 수익증권 14. 종류C-I 수익증권 15. 종류C-F 수익증권 16. 종류C-W 수익증권 17. 종류S 수익증권 ②~⑤ (현행과 같음)
제39조(보수)	내용변경	①~②(생략) ③ (생략) 1. 종류C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 2. 종류C-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 3. 종류S-T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①~②(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종류C-Y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 2. 종류Ce-Y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 3. 종류St-Y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p> <p>4. 종류A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2.5</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5.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8</p> <p>5. 종류A-E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2.5</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2.5</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8</p> <p>6. 종류A-G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2.5</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3.5</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8</p> <p>7. 종류C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2.5</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9.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8</p> <p>8. 종류C-E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2.5</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4.5</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8</p> <p>9. 종류C-G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2.5</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6.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8</p> <p>10. 종류C-P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5</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8.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8</p> <p>11. 종류C-Pe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5</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8</p>
--	---------------------------------------	---

			<p>12. 종류C-R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8</p> <p>13. 종류C-R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8</p> <p>14. 종류C-I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2.5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5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8</p> <p>15. 종류C-F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2.5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3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8</p> <p>16. 종류C-W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2.5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8</p> <p>17. 종류S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2.5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2.5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8</p>
제40조(판매수수료)	내용변경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p>① 판매회사는 종류 A, 종류 A-E 및 종류 A-G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서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p> <p>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류 A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5%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 2. 종류 A-E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25%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 3. 종류 A-G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35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 <p>③ 판매회사는 종류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p>

			<p>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100분의 0.15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호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종류S 수익증권 후취판매수수료: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p> <p>⑤ 제4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제4항제1호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p>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내용변경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 (C-P, C-Pe, C-R, C-Re 클래스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